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 대학교 「교외연구비관리 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비와 사업비 예산으로 구축되는 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의 체계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15인 내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부단장, 관리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
2. 재적위원 중 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은 3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삭제 2016. 3. 1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2. 공동활용 대상 연구장비의 선정
3. 국가시설장비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연구장비의 유희·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4. 장비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5.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6.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장비심의) ① 연구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③ 연구장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 시설·장비별 도입 심의서”에 의한다.

제7조(경비지급)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표준지침(미래창조과학부)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2016. 3. 14.)

부 칙

1. 이 지침은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지침은 201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지침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시설·장비별 구축 계획서 >

1-1. 연구시설·장비 개요

과 제 명								
시설 장비명	한글							
	영문							
제작사 및 모델명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기재)		
구축비용 (단위: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구축장소								
사전기획여부 ^{a)}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여부 ^{b)} (해당란에 '○'표시)		
장비용도 분류 (해당란에 '○'표시)		시험	분석	교육	계측	생산	기타(직접기재)	
장비용도 설명 (구체적인 용도 기술)		○ ○						
핵심 요구 성능		○ ○						
장비특성		○ ○ ※ 장비가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과 그로인하여 구축, 설치, 운영 시에 지켜야 하는 특수 조건들을 기재						
주요사양 (주장비, 부대장비 등 신청장비에 대한 상세사양을 기술)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a) 사전기획여부를 실시하였을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

b) 수요조사여부를 실시하였을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1-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 검토(NTIS 검색)

No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 년도	취득금액 (단위: 백만원)	설치기관	지역 중복 여부	공동 활용 여부	장비 등록 번호	검색 키워드	자체 검토의견
1											
2											
3											
4											
5											
6											
7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연구: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6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대구, 경북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 제주

- 타지역: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예 : NFEC-2013-01-123456)

1-3. 연구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p>사업(연구) 부합성</p>	<p>○ ○ ○</p> <p>※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p>
<p>국가전략적 필요성</p>	<p>○ ○ ○</p> <p>※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 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 개발계획 또는 구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p>
<p>연구 시설·장비 의중복성</p>	<p>○ ○ ○</p> <p>※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 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 검토(NTIS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p>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 시설·장비 의 활용성</p>	<p>○ ○ ○</p> <p>※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p> <p>※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 시설·장비 의 적정성</p>	<p>○ ○ ○</p> <p>※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p> <p>※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p> <p>※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p>	<p>○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p> <table border="1" data-bbox="352 1592 1422 1693"> <thead> <tr> <th data-bbox="352 1592 504 1626">성명</th> <th data-bbox="509 1592 703 1626">소속</th> <th colspan="3" data-bbox="708 1592 1023 1626">최종학위</th> <th data-bbox="1027 1592 1161 1626">채용예정</th> <th data-bbox="1166 1592 1422 1626">비고</th> </tr> <tr> <td></td> <td></td> <th data-bbox="708 1632 810 1666">학사</th> <th data-bbox="815 1632 917 1666">석사</th> <th data-bbox="922 1632 1023 1666">박사</th> <td></td> <td></td>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p> <p>※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p> <p>※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전담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전담인력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인 경우 인정된(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해당없음). 5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적임</p> <p>※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p>	성명	소속	최종학위			채용예정	비고			학사	석사	박사									
성명	소속	최종학위			채용예정	비고																
		학사	석사	박사																		

Ⅱ. 연구 시설·장비별 도입 심의서

1-1. 연구장비별 위원별 심의 의견서

심의번호			
과 제 명			
장 비 명			
심의항목	심의 내용	평가 (○,×)	
사업(연구) 부합성	1.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장비가 사업(연구)과 부합하는가?		
	2. 연구장비가 도입되는 시기가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적정한가?		
	3.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가?		
	4. 재정지원사업으로 구축이 타당한 장비인가?		
국가전략적 필요성	5.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가?		
	6. 연구위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장비인가?		
연구장비의 중복성	7. 기 구축된 장비와 중복성이 낮은 장비인가?		
	8. 기존에 동일유사장비가 있어도 별도로 구축해야하는 장비인가?		
연구장비의 활용성	9. 동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가?		
	10. 해당사업 종료 후 타 사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가?		
	11.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가?		
연구장비의 적정성	12.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 및 성능을 갖추고 있는가?		
	13. 장비예산이 과다하게 요구되지 않고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14. 요구한 장비보다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대체장비가 있는가?		
장비운영의 계획성	15. 장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은 확보 또는 확보계획이 있는가?		
	16. 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 공간 및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적절한 운영 계획이 제시되었는가?		
	17. 사업(연구) 종료 후 합리적인 운영계획이 제시되었는가?		
심의의견			
가 []	부 []	보완 []	심의위원: _____ (서명)

